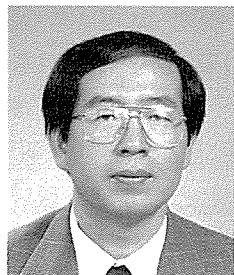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역기능 정보화 사회의 프라이버시 침해

컴퓨터에 의한 대량의 정보집적과 관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악명 높았던 지존파가 현대백화점 고객명단을 확보하여 차례로 납치 살해하려던 계획을 털어놓았던 것처럼 41개의 개인신상정보를 수록, 관리하는 전자주민카드도 이 자료가 제3의 범죄조직에 넘어가는 경우 개인은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책이 절실하다.

현대판 알라딘, 컴퓨터

“아침 7시 30분. 자명종이 울리자 침실의 커튼이 조용히 열리고 온도조절장치는 안락한 화씨 70도로 난방을 한다. 부엌의 커피 퍼콜레이터는 저절로 물을 끓이고 개를 내보내기 위해 뒷문이 자동적으로 열린다. TV는 그날의 뉴스방송을 내보낸다. 현대판 알라딘은 침대에서 누워 단추만 누르면 사업과 개인적인 메모가 나타난다. 지정된 시간에 원하는 온도의 물을 자동적으로 틀어주는 샤워로 목욕을 끝내면 자동차의 엔진은 미리 걸려 대



朴 元淳
(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기중이다. 그 차를 타고 출근한다.”

1978년 2월 20일자 「타임」지 기사의 한 내용이다. 당시로서는 꿈 같은 이야기였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꿈은 아니다. 자동시동장치, 온도자동조절기, 자동경보기, 자동개폐장치 등을 이미 일상생활 속에 보편화되었다. 미켈란젤로가 그냥 습작처럼 그려본 ‘날틀모

형’이 이제 비행기로, 그것도 달을 왕복하는 우주선의 시대가 되었다.

「타임」지가 묘사한 ‘알라딘’ 세계와 같은 꿈의 실현에는 컴퓨터의 발명과 발전이 가장 큰 기초가 되었다. 컴퓨터만큼 급격한 발전과 보편적 이용을 이룩한 기계는 이 세상에 다시 없다. 컴퓨터는 인류의 발전단계에서 불의 사용 이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

천사와 악마의 두 이미지

과학기술은 이토록 인간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면서도 동시에 그로인한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주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컴퓨터에 의한 대량의 정보집적과 관리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극도로 높였다. 이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 관한 온갖 정보들이 나돌아 다니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성별, 출신지, 출신학교 같은 단순정보 뿐만 아니라 성격, 취향, 투표 성향까지 분석되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집이나 사무실로 발송되어 오는 수많은 DM 우편물들은 모두 자신의 주소나 신분이 자신도 모르게 알려진 경우이다. 때로는 상품 매수권유나 여론조사 등 온갖 전화에 시달리는 것도 스스로 전화 번호를 알려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회원주소록이나 명부에 의해 파악된 경우이다. 그러나 가장 소름끼치는 일은 언제 살인명부에

오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 끔찍한 범행으로 악명을 날렸던 지준파는 현대백화점 고객명단을 확보하여 차례로 납치·살해하려했다는 계획을 스스럼없이 털어놓았던 적이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는 불가피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 이후 전국의 행정전산망계획에 따라 행정망, 금융망, 교육연구망, 공안망, 국방망 등 5개 분야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이 모든 전산자료에는 개개인들의 신상에 관한 정보들이 집적되게 마련이다.

예를 들면, 총무처의 인사관리자료, 국가보훈처의 보훈대상자, 외무부의 여권발급자료, 법무부의 재소자 신분카드관리, 국세청의 과세자료 등에서 개인의 신상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행정전산망 수립에 의해 너무도 편리하게 행정계획과 시책을 펼 수 있지만 국민들은 언제 자신의 정보가 악용될지 알 수 없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주민등록,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 인감, 지문 등 41개 항목의 개인신상정보를 수록, 관리한다는 전자주민카드가 선보였다. 이 내용들은 이미 각 기관에 의해 파악, 관리되고 있는 기초자료들이어서 전자주민카드에 모아 놓는다고 별일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산재한 정보들을 모으고 그것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

합하면 엄청난 정보가 될 수 있다. 그것도 정부의 불순한 의도에 의해서, 또는 제3의 범죄조직에 넘어가는 경우 개인은 속수무책이다.

1995년 1월 우리나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신용정보의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의 정보에 한정되는 등 문제점이 적지않게 드러났다. 행정기관에 의한 정보집적과 그 악용에 대한 대책은 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역시 우리나라가 최근 가입한 OECD는 빠르다고 할만하다. OECD가 전문가그룹의 작업을 통하여 1980년 9월23일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 권고’를 채택하였다. 이것은 세계 각국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입법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8개의 가이드라인 가운데 몇가지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어떠한 개인 데이터도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데이터 주체에 알리거나 동의를 얻은 다음 수집하여야 한다. (수집제한의 원칙)

2. 개인데이터는 그 이용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하며 이용목적

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정확하고 안전하며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데이터내용의 원칙)

3. 개인데이터의 수집목적은 늦어도 수집시까지 명확히 되어야 한다. 그 후의 데이터 이용은 수집목적의 실현 또는 수집목적과 모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목적 명확화의 원칙)

4. 데이터는 분실 또는 부당한 접근, 파괴, 사용, 수정 개시(開示)의 위험으로부터 합리적인 안전보장조치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안전보호의 원칙)

죠지 오웰의 「1984년」 교훈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세계 각국은 그 설정에 맞는 프라이버시보호법제를 발전시켜 왔다. 1970년대 초 스웨덴의 데이터법, 미국의 프라이버시법, 서독의 연방데이터보호법, 캐나다의 인권법, 프랑스의 정보처리 축적과 자유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었다. 그후 이 법률들은 개정을 거듭하며 정보의 유통과 프라이버시의 보호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쫓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 왔다.

작가 죠지 오웰의 「1984년」은 정보사회에서 인간이 조작과 통제의 대상이 되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정보산업의 발전과 컴퓨터의 끝없는 개발은 그런 삭막한 사회에 대한 음침한 예측을 가능케 하고 있다. 거기에 인간적 고민과 윤리적 잣대가 깃들여 있지 않는 한 말이다. ST